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39

발의연월일: 2024. 7. 5.

발 의 자:한병도・이기헌・서영교

박희승 • 서미화 • 박수현

이해식 · 임오경 · 이원택

한민수 · 박 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,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 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,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위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고 있음.

그런데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'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'를 꼽는 응답자가 40%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으며,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면 감염병전문병원 등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유치원 등의 부동산 취득,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경영 용도의 부동산 취득 및 사용,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의료기관 설립에 기여하려는 것임.(안 제19조, 제22조, 제22조의2)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중 "2024년"을 각각 "2027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4년"을 "2027년"으로 한다.

제2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"2024년"을 각각 "2027년"으로 한다.

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4년"을 "2027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4년"을 "2027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	제19조(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
한 감면) ① 「영유아보육법」	한 감면) ①
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	
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이하 이	
조에서 "유치원등"이라 한다)으	
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	
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	
세를 <u>2024년</u> 12월 31일까지 면	<u>2027년</u>
제하고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	
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	
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	
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·	
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	
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	
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	
분의 50을 <u>2024년</u> 12월 31일까	<u>2027년</u>
지 경감한다.	
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	②
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	
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	
한다)를 <u>2024년</u> 12월 31일까지	<u>2027년</u>
면제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
- ③ (생 략) 제22조(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저 감면) ① ~ ⑦ (생 략)
 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경감한다.
 - 1.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의 100분의 30[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(이하 "감염병전문병원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100분의 40]을 경감한다.
 - 2.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
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
 재산세의 100분의 50(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

3	(현행	과 같음)		
테223	스(사회-	복지법인	등에	대한
감면	1) 1	~ ⑦	(현행고	가 같
음)				
8				
1	· 			
	2027	'네		
	<u> 2021</u>	<u>.</u>		
2				
	<u>2027</u>	<u>'년</u>		

60)을 경감한다. 제22조의2(출산 및 양육 지원을 저 위한 감면) ① 18세 미만의 자 녀(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 준으로 하고,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, 입양된 자녀 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 함하지 아니한다)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다자녀 양육자"라 한다)가 양 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 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 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(자동 차의 종류 구분은 「자동차관 리법 시3조에 따른다) 중 먼 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,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「지방세법」 제12조제1항제2 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 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. 다만, 다자녀 양육자

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

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

세22조의2(출산 및 양육 지원을
위한 감면) ①
<u>2027년</u>

배우자 및 자녀(자녀와의 공동 등록은 제2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) 외의 자와 공동등록 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

- 1. ~ 4. (생략)
-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.
- 1. ~ 3. (생략)
- ③ ④ (생 략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
<u>2027년</u>
<u>.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